

사료와 지도에 새겨진 유산: 독도의 역사적 귀속 증거

A Legacy Etched in Records and Maps:
The Historical Evidence for Sovereignty over Do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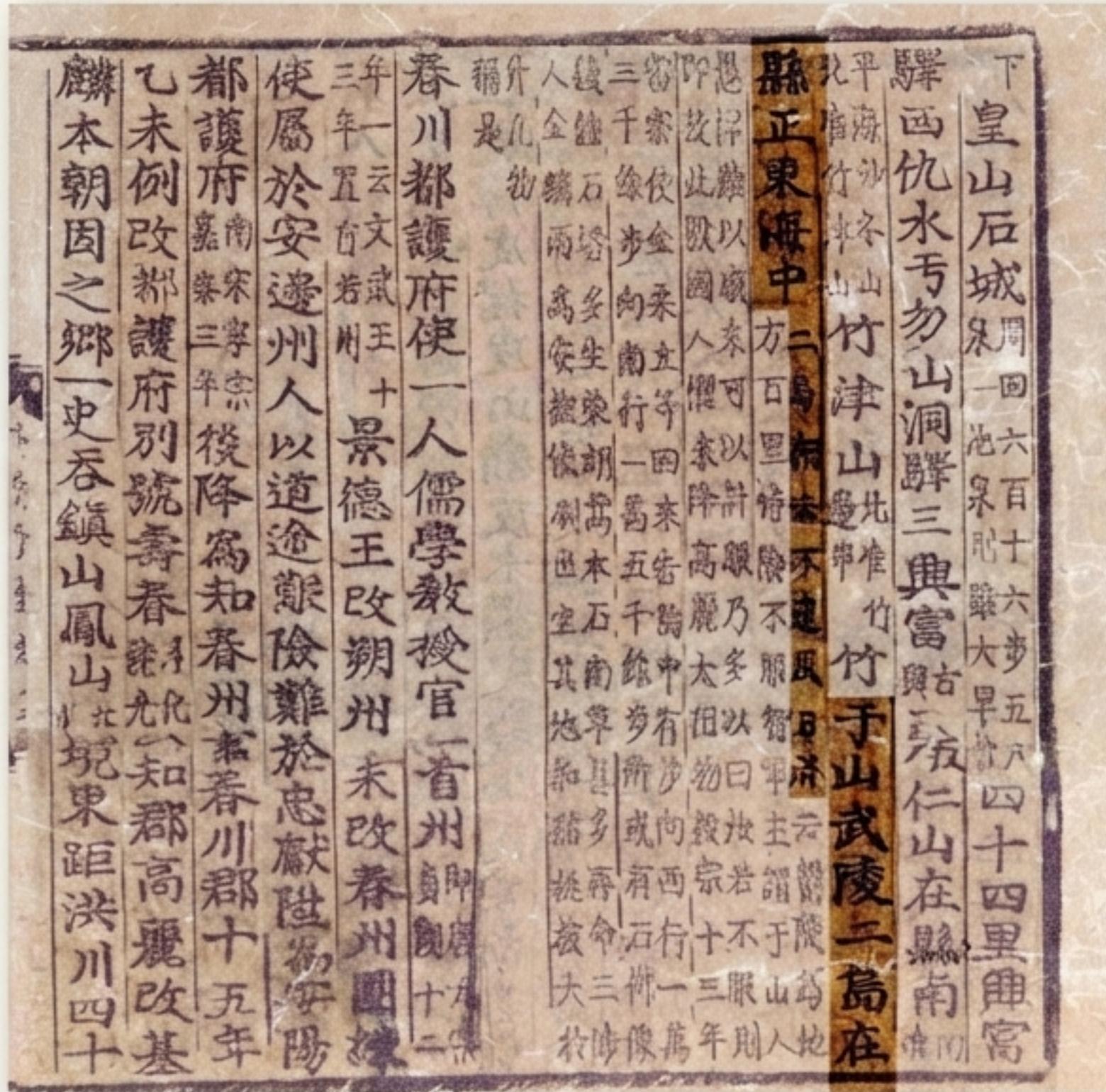
하나의 섬, 여러 개의 이름

우산도 (于山島)
자산도 (子山島)
가지도 (可支島)
석도 (石島)
독도 (獨島)

송도 (松島) Argonaut
량고도 ('リヤンコ島) Dagelet
죽도 (竹島) Liancourt Rocks
Hornet Rocks
Olivutsa & Menelai

이처럼 다양한 이름은 독도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문화권에 의해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사료와 지도를 통해 이 이름들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첫 공식 기록: 두 섬을 인지하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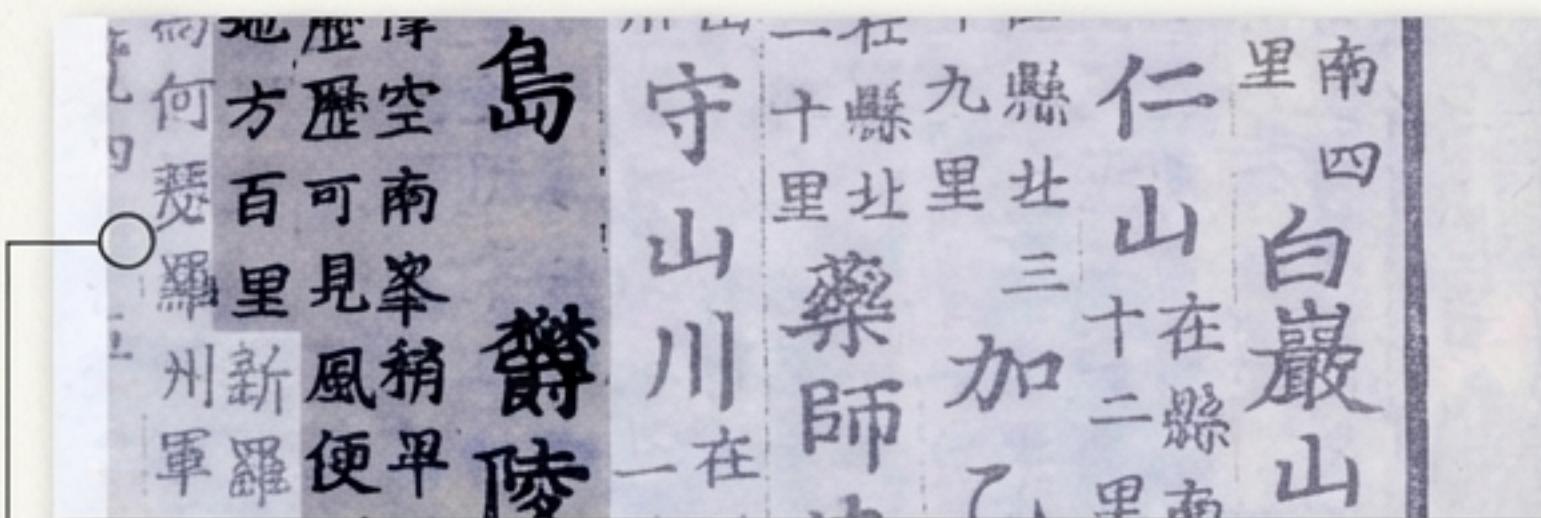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15세기 조선,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
및 지리적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국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편찬된 공식 지리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영토 인식을 증명합니다.

일관된 인식의 기록: 조선의 영토로 이어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 두 섬이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16세기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지속적으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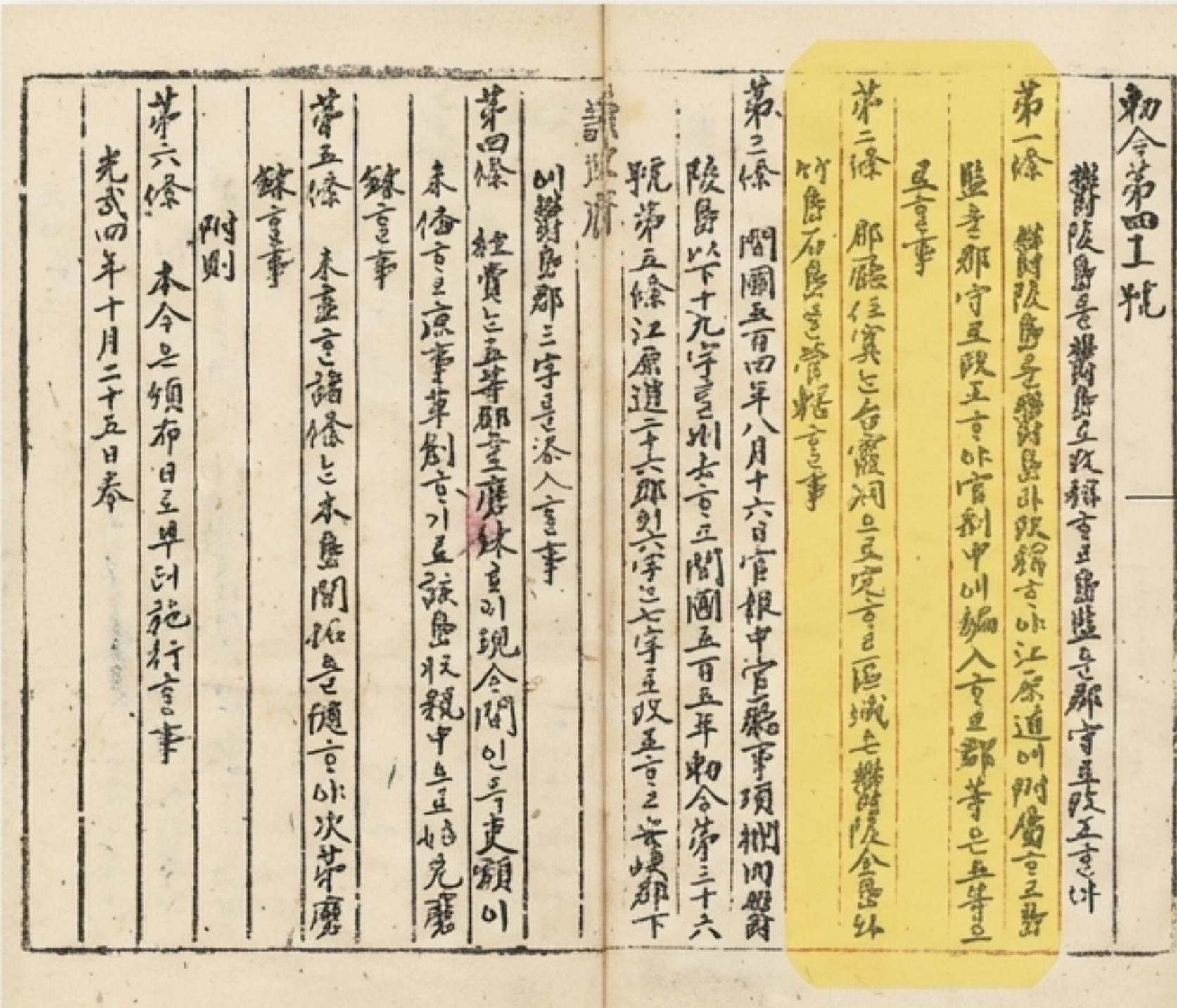
『만기요람』(1808)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다.」

우산도가 일본이 지칭하는 송도(마쓰시마, 당시
독도의 일본명)임을 명확히 하여, 두 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연결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

근대 국가의 통치: 칙령으로 독도를 관할하다



제2조 (강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 할 것.」

대한제국은 울릉군을 설치하며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를 명시,
독도를 근대적 행정체계에
공식 편입했습니다.

‘석도’는 ‘돌섬’의 한자 표기이며, 이는 ‘독섬’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독도(獨島)’와 동일한 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칙령은 관보를 통해 국내외에 공포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록 #1: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다 (17세기)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일본 관리가 오키섬을 시찰한 후 작성한 공식 보고서.

「이 두 개의 섬(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17세기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경계 밖, 즉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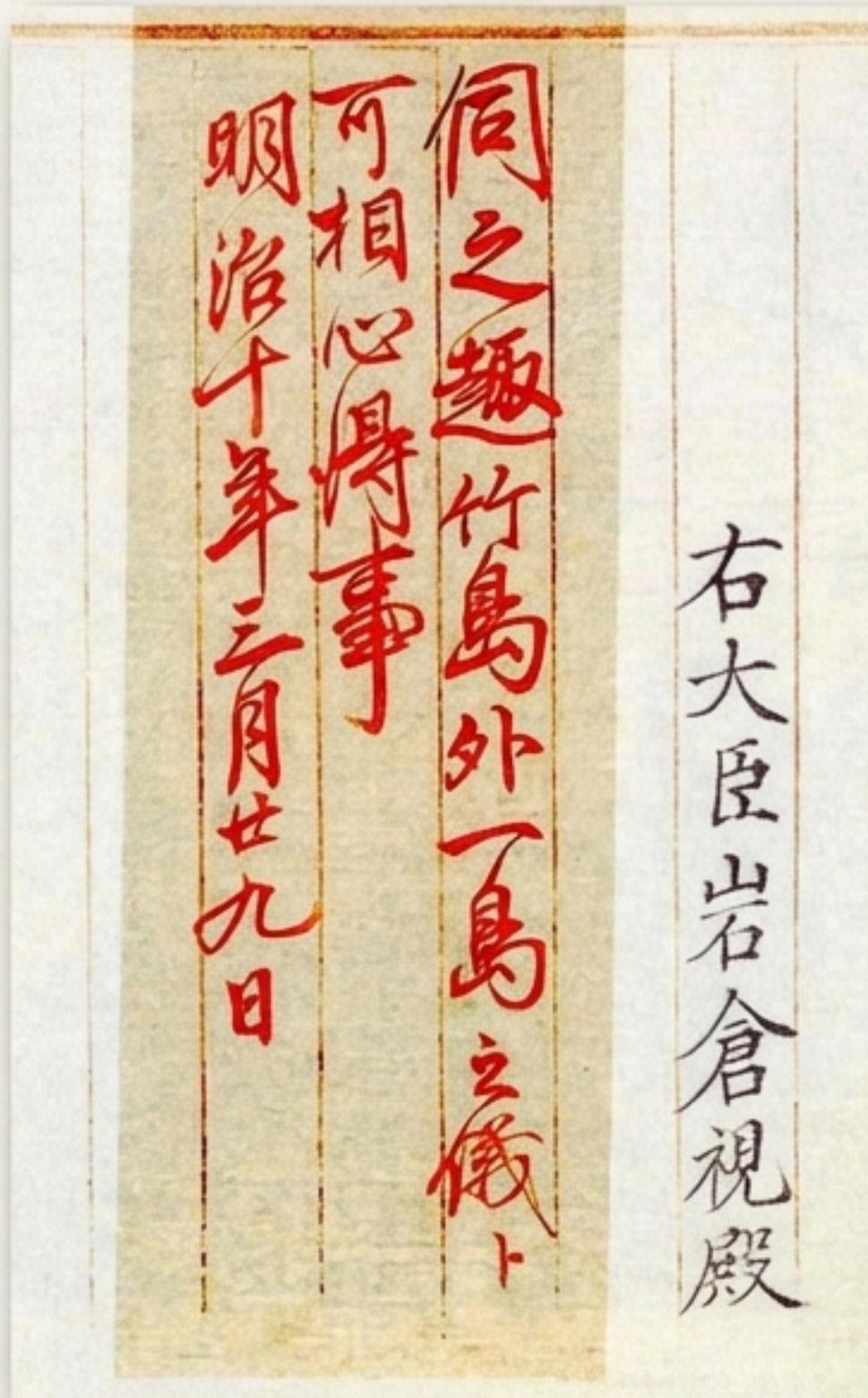
此形為限矣。民部因是帳云凡諸健見免德彼隱

也。周言周穗地郡屬王小等其有者周士郡南岸高鄉
豐崎也。從是南至雲州則莫無園三十五里晨已登舟
州赤崎浦四十里未至申至石州溫泉津立十八晉
子至卯無可往地戊亥旦間行二日一夜有松嶋又一
地見高乘如雲州望凡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



隱州視聽合記卷一

일본의 기록 #2: 최고 행정기관의 공식 지령 (19세기)



「태정관 지령」(太政官 指令, 1877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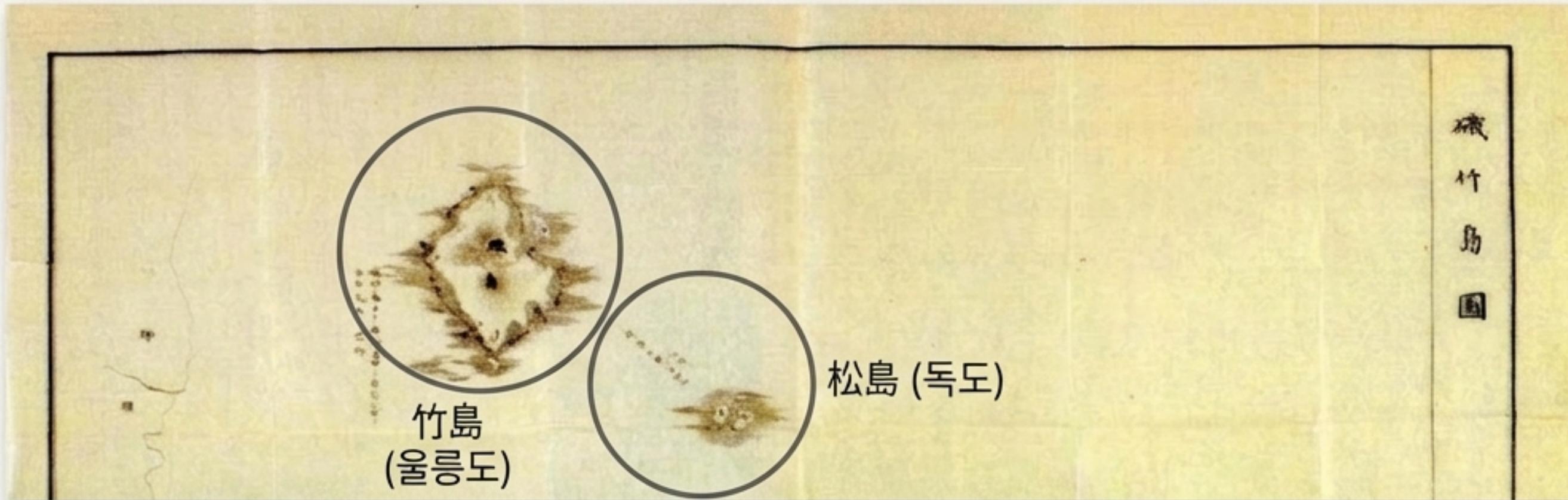
문석

1876년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현의 지도에 포함할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자, 내무성을 거쳐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최종 결정.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영토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는 일본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태정관 지령의 시각적 증거: ‘그 섬’은 독도였다



Map Title: 기죽도약도 (礪竹島略圖)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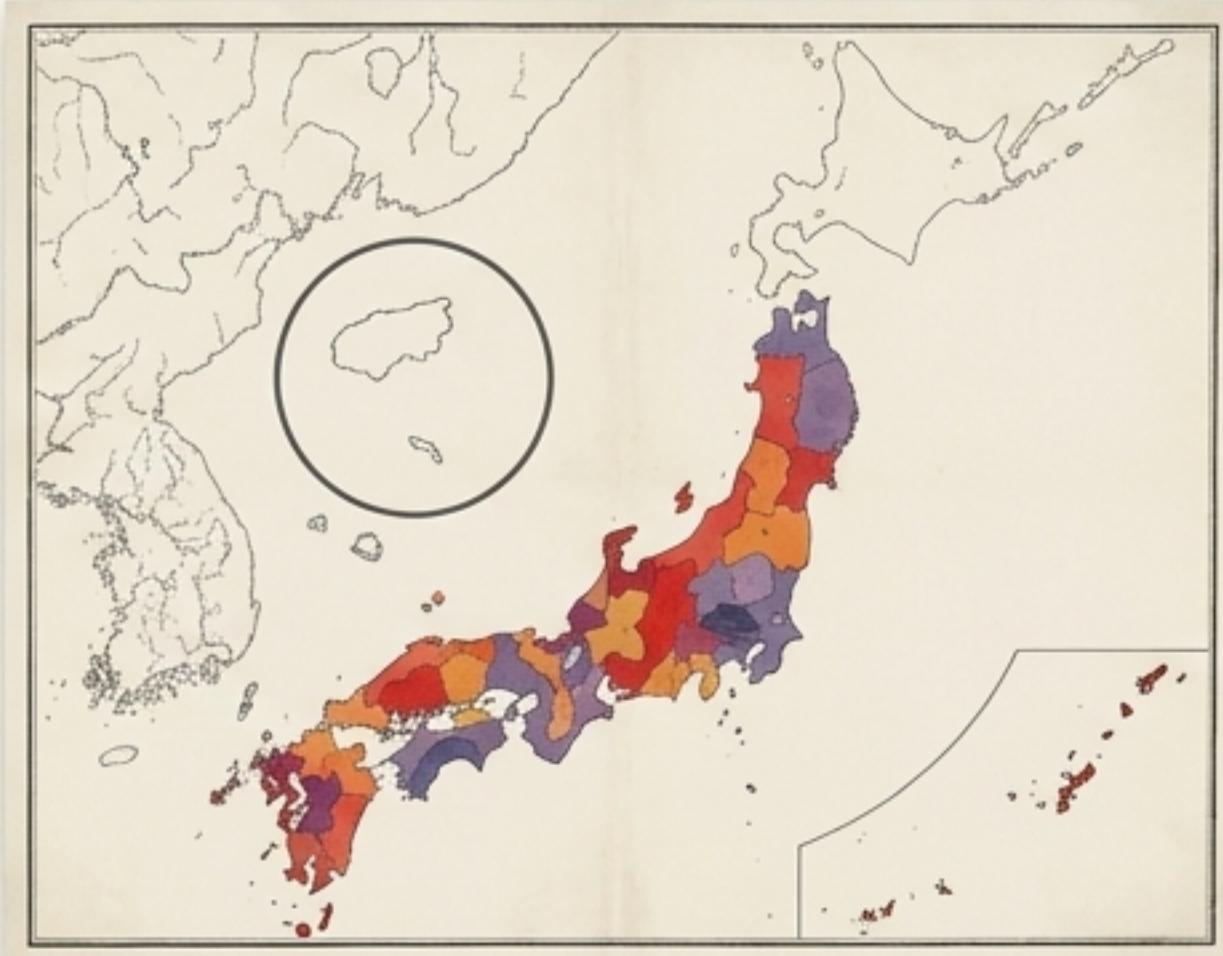
1. 태정관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한 ‘죽도(울릉도) 외 1도’의 정체는 첨부된 지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지도에는 울릉도 바로 옆에 송도(松島), 즉 당시 일본이 독도를 부르던 이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Conclusion

문서와 지도의 결합은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교차 검증합니다.

일본 고지도의 증언: 경계 밖의 두 섬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1779)



일본 본토와 동일한 채색 없이,
영역 밖에 위치시킴.

『삼국접양지도』(1785)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칠하고,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직접적으로 표현.

서양 고지도의 교차 검증: 국제적 인식

『삼국통람도설』 부속 지도 (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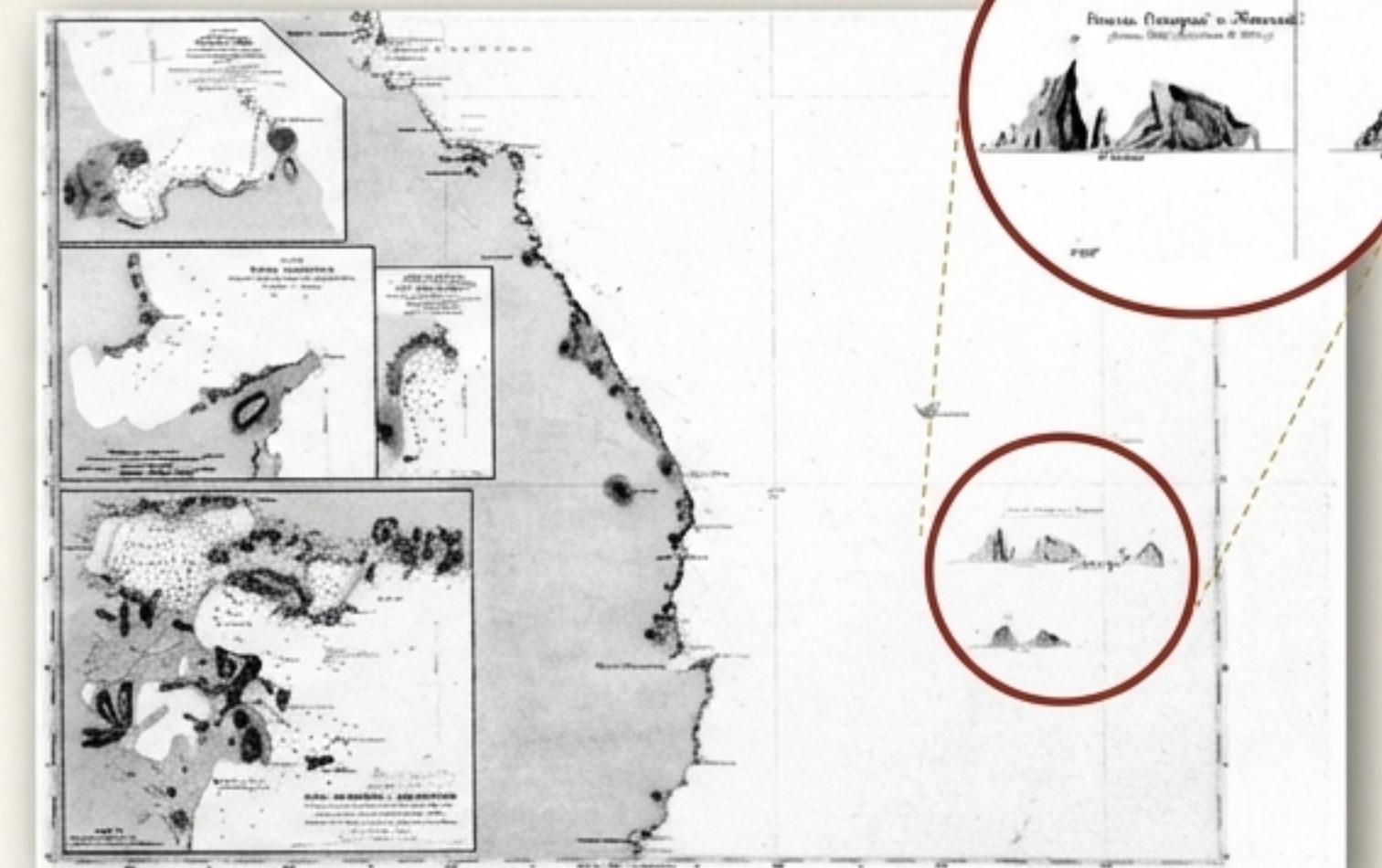
하인리히 클라프로트 (독일)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채색하여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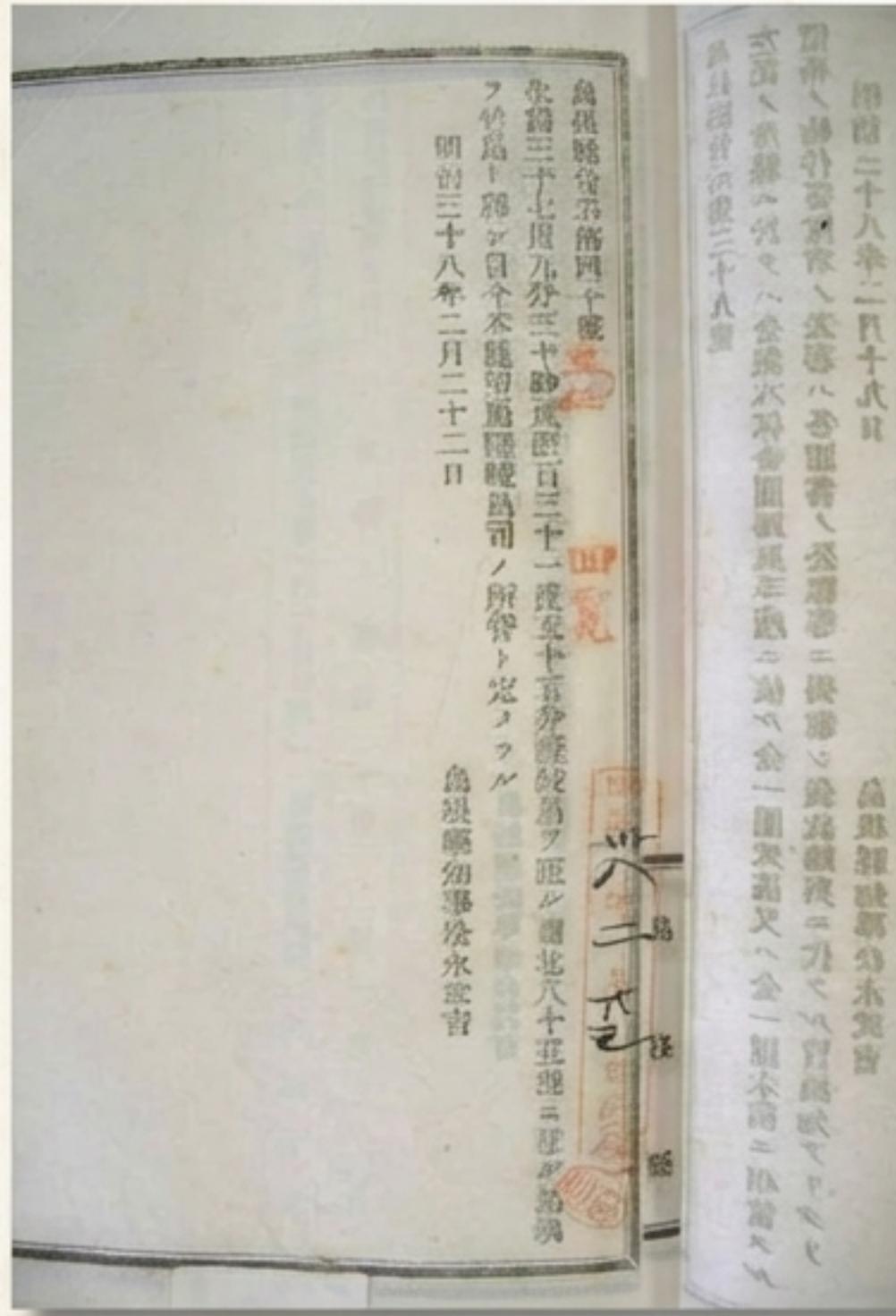
『한반도 동해안 지도』 (1857)

러시아 해군 수로국



독도를 한반도 동해안의 일부로 측량하고 지도에 포함,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시사. 이 지도는 이후 일본 해군도 번역하여 사용했습니다.

역사의 단절: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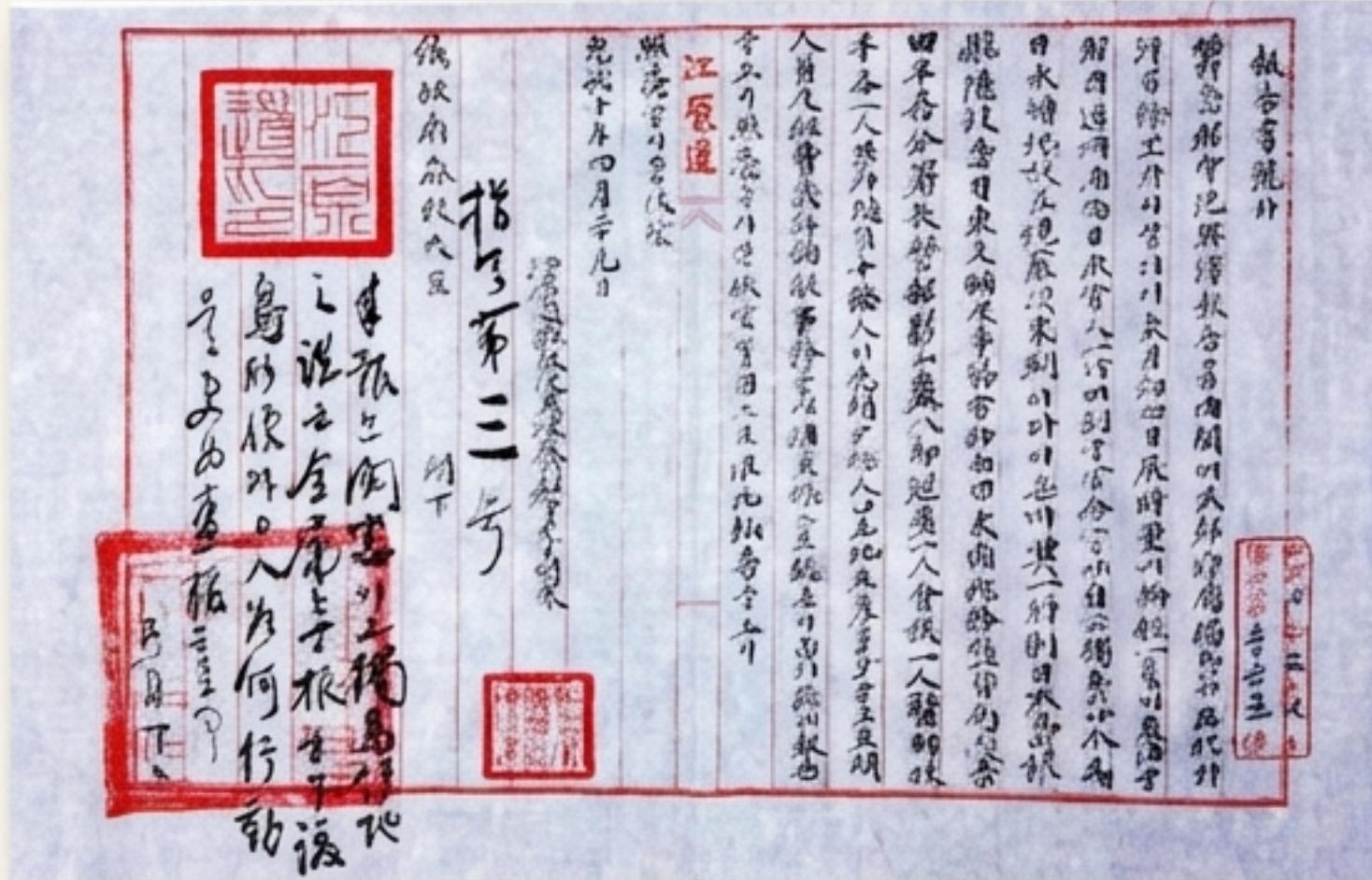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
섬을 죽도(다케시마)라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1905년 2월 22일)

- 모순: 1877년 태정관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령한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
- 비밀성: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 없이 비밀리에 진행됨.
- 역사적 배경: 러일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무주지 선점 주장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음.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

1905년의 편입 시도는 수백 년간 축적된 역사적 사실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무시한,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대한제국의 대응: 불법 편입 시도를 즉각 인지하고 반박하다



시마네현 관리 울릉도 방문, 독도 편입 통보 (1906년 3월)

울릉군수 심홍택,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

강원도 관찰사, 중앙 정부(의정부)에 보고

의정부, '지령 제3호' 하달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 (1906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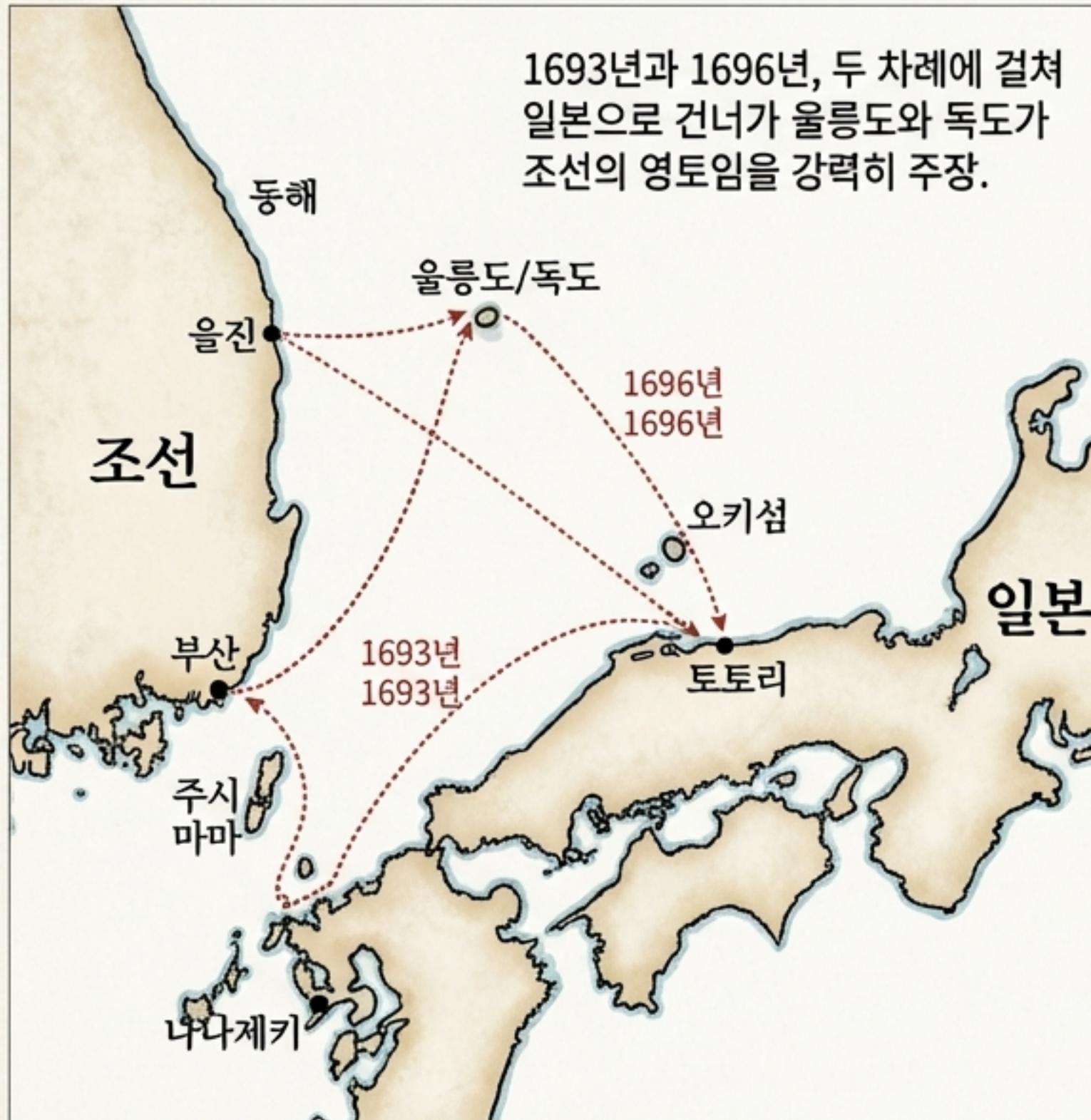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 소속 득도가 일본 양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

의정부 지령 제3호 (1906년 5월 20일)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최고 의결기관 의정부는 독도 영지 운운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인지한 즉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사실무근으로 규정하고
영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교적 확증의 계기: 안용복의 활동과 일본 막부의 공식 답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

울릉도/독도

1696년
1696년

키섬

일보

부산

주시
마마

나나제키

소스 : 「돗토리번 답변서」(1695) & 도쿠가와 막부의 「도해 금지령」(1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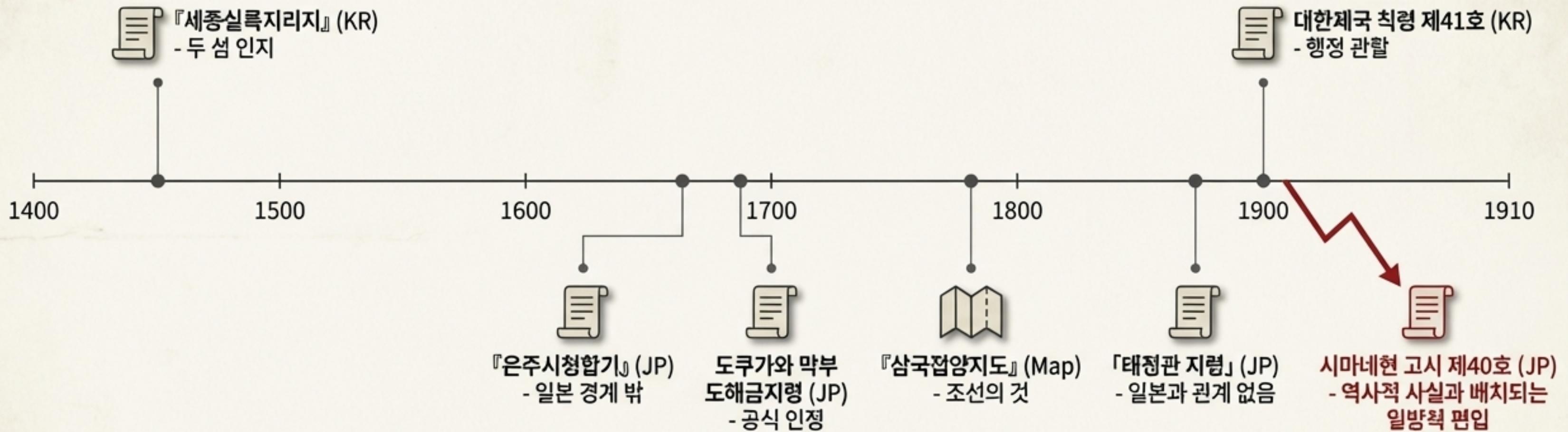
컨텍스트 :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양국 간 외교 교섭 결과, 막부가 돛토리번에 울릉도(즉도)의 소속을 문의하자 제출된 공식 답변.

{ 「죽도(울릉도)는 이나바, 호키(돗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

막부의 결정 : 이를 근거로,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 도해(渡海)를 공식적으로 금지.

민간 외교가 촉발한 정부 간 협상 결과, 17세기 말
일본의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가 부속도서(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렴하는 증거: 역사적 사실의 타임라인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지속적인 영토 인식은
일본의 공식 문서와 국내외 고지도에 의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1905년의 편입 조치는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



1. 지속적인 주권 행사 : 대한민국은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명백한 영토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관리해왔습니다.

2. 일본 스스로의 인정 : 17세기 막부의 보고서와 19세기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일본 측 사료가 한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3. 불법적 편입 시도 :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수백 년의 역사적 사실과 자국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불법 행위이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시기에 기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감정적 주장이 아닌, 사료와 지도에 기록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